



법 제 처

수신 국토교통부장관(첨단물류과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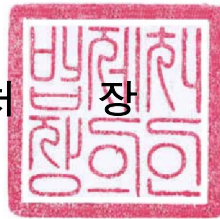
(경유)

제목 입법예고기간 단축 협의 확인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
부개정령안)

1. 첨단물류과-3102(2023. 12. 14.시행)호와 관련입니다.
2. 아래의 법령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14조에 따라 입법예고기간 단축 협의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 - 법령명 :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 - 입법예고기간: 28일간
3. 한편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개정으로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도입 등 입법예고 방법이 변경되었으니 불임2(통합입법예고 실시 안내)를 참고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불 임 1. 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
부개정령안) 1부.
2. 통합입법예고 실시 안내 1부. 끝.

법 제 처



주무관 **권정아** 서기관 **장일수** 법제정책총괄 전결 2023. 12. 15.
과장 **최성희**

협조자

시행 법제정책총괄과-6336 (2023. 12. 15.) 접수 첨단물류과-3130 (2023. 12. 15.)

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법제처 (어진동) / <http://www.moleg.go.kr>

전화번호 044-200-6563 팩스번호 044-200-6958 / jjeong@moleg.go.kr / 비공개

만 나이로 셉니다 만 나이로 삽니다